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08

발의연월일: 2022. 2. 8.

발 의 자 : 태영호 · 박완수 · 이종배

조경태 · 김영식 · 김정재

한무경 · 김승수 · 김석기

박 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 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생 략)	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
	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④</u>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u>금</u>	⑤
<u>액과 납부 방법</u> 및 관리 등에	<u>부 방법</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